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병준

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10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5일

3. 제안이유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내용 반영하여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재난안전대책본부 목적 변경(안 제1조)

○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 보호

→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 총괄·조정

나.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 변경(안 제2조)

○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에 관한 총괄·조정

→ 재난의 대응·복구 등에 관한 총괄·조정

다.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기간 규정 (안 제7조)

→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간

- 하절기: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
- 동절기: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

→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

라. 상황판단회의 소집 사유 변경 (안 제9조)

○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

→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

마. ‘위기경보 발령’과 ‘재난 예·경보 실시’구분(안 제17조, 안 제18조)

바. 자연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[별표3]

→ 자연재난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[별표 4]의 가동 기준에 지진·화산 분야 추가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○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에 관한 총괄·조정을 위해 운영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의 대응·복구 등에 관한 총괄·조정 기능으로 변경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○ 안 제1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목적을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의 개정예에 따라 변경하였음.

- 안 제2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법 제14조의 개정에 따라 변경함.
- 안 제7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기간을 하절기와 동절기 기간 중 자연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간과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17조 및 제8조는 법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라 위기경보와 재난 예보·경보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기타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입법예고('18. 8. 31.~'18. 9. 20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에 관한 총괄·조정을 위해 운영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의 대응·복구 등에 관한 총괄·조정 기능으로 변경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